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67호 2024. 9. 12.(목)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_\_\_\_\_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 제정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예산법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5033, 팩스 032-560-27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 제안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br>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